

1. 서 론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래 과학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로 인류의 생활양식은 급속도로 윤택하여져 왔으나, 이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우리 인류의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국가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였으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와지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도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2. 현 황

가. 오염원 현황

○ 전국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단위 : 업소수)

구 분	'87	'88	'89	'90
업 소 수	23,512	25,116	27,332	29,189
증 가 율	-	7%	8.6%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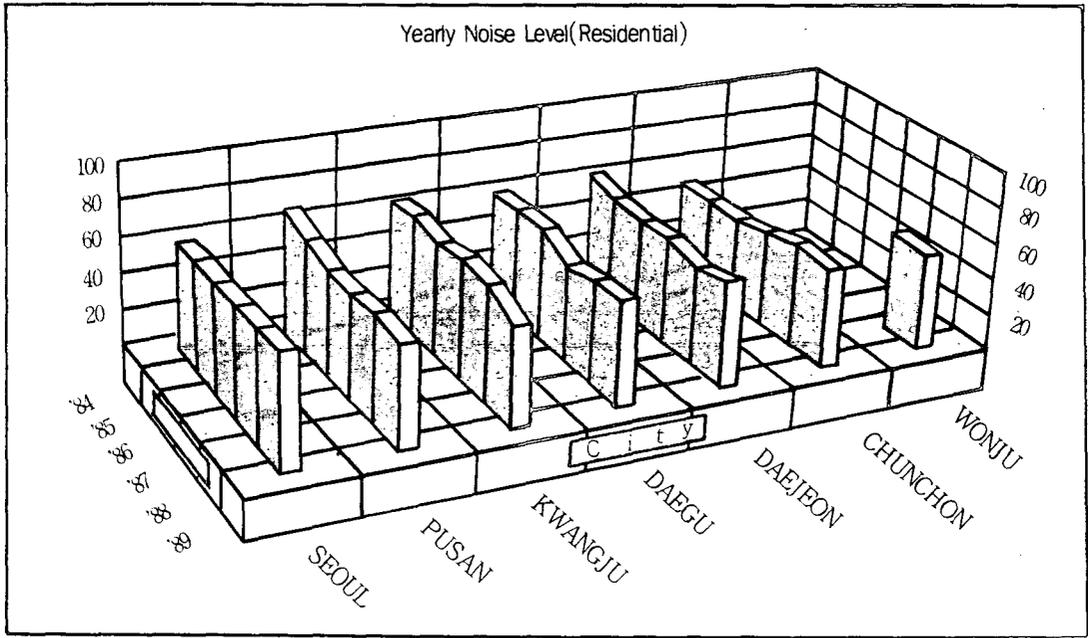
○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수)

구 분	'86	'87	'88	'89
등록대수	1,309,434	1,611,575	2,035,000	2,660,000
증 가 율	-	23%	26.3%	30.7%

나. 소음도 현황

㉠ 주요지역 소음도 현황(주거지역 낮시간대 소음도)



주요지역소음도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소음측정망은 7개도시 64개 지역 320개 지점에서 밤·낮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90. 3/4 분기의 경우 일반지역은 낮 192개 지점중 99개 지점(52%), 밤 128개 지점중 92개 지점(52%)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도로변 지역은 낮 128개 지점중 80개 지점(62%), 밤 128개 지점중 92개 지점(72%)에서 환경기준 55dB(A)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년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중 도로변 지역에서는 측정지점 2,279지점중(90%), 야간 1,808지점(79%)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환경기준 초과율 면에서는 일본 동경보다 훨씬 낮은 율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기준 자체가 일본보다 5dB 정도 더 완화되어 있어 도시소음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소음도가 원주, 춘천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소음

환경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대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관계법령의 미비이다. 현행 환경보전법에는 소음진동 업무를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등 이질적인 사항과 혼합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오염원 관리업무에 능동적 대처가 곤란할 뿐 아니라 소음진동과 관련된 조문도 10여개 항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규제 또는 관리업무에 미흡하고,

둘째로는 소음원의 급증이다. 우리나라의 소음진동 배출업소수는 매년 7~8%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의 수는 폭발적인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화 및 인구의 도시집중등으로 각종 공사장 등 건설소음원과 확장기등 생활소음원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등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셋째는 국민들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급증이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에 대한 인식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많은 진정중



에서 환경오염 피해진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고, 환경오염 피해진정중에서도 소음진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4. 규제방안

정온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지되어야 할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소음도 저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천적으로는 도시계획단계 부터 토지이용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건축물등의 배치 및 도로망의 설계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환경행정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할 규제방안은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소음진동규제법을 제정하여 소음진동의 발생원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둘째는 자동차 소음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작차와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제작차는 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출고시 부터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며, 운행차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 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등이 뒤따르도록 하여 차량의 정비등 소음저감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셋째, 배출시설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공장소음

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주거지역등에 인접된 대규모 공장은 소음진동 전문 관리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토록 하는 등 소음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동행상의 확성기등 이동소음원을 규제하여 주거지역등에서 정온한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다섯째, 건설소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서는 폭약사용의 제한과 건설공사 공법 변경 및 공사시간 조정등을 통하여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며,

여섯째, 항공기, 철도 소음 등 다수인들에게 일시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도 단계적으로 규제해 나가되 그 첫단계로는 항공기소음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규제근거를 확보하고 다음 단계로 철도소음, 도로진동등도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규제해 나감으로서 정온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지역별로 그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해나감으로서 소음 환경기준이 달성될 수 있게 될 것이다.